

직제규정중 일부 개정 규정 공포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직제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. 1. .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

사 장 박 현 출 (인)

ㄱ 규정 제349호

ㄴ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직제규정

직제규정 일부 개정 규정

1. 개정 사유

-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 사항 규정화

2. 주요 개정 내용

-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 관리
- 직원의 정년 당해연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직군(전문직)으로 운영

3. 참고 사항

- 제안 근거 : 정관 제25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
-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합의 필
- 절 차 :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장 승인 후 공포 시행
- 기 타 : 1. 직제규정 개정(안) 1부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직제규정 일부 개정 규정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직제규정 중 일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(별도 정원 및 직군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“① 제14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채용된 신규인력 규모만큼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며,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- ② 직원의 정년 당해연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별도 직군(전문직)으로 운영하며,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”

부 칙〈제349호, 2016.1.〉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(안) |
|----------|--|
| (신 설) | <p>제14조의2(별도 정원 및 직권) ① 제 14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채용된 신규인력 규모만큼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며,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직원의 정년 당해연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별도 직군(전문직)으로 운영하며,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</p> |